

거창 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4~
----------	-------

제출일자 : 2014.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1. 요구이유

거창 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이행과 2013년 11월 경남도 수감결과 지적받은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무 :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나.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 거 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3,917㎡	지상2층	258.0㎡	300.2㎡	철근콘크리트구조	10타석	100m



○ 테니스장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양투카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66.28m ²	12개	7829m ²



-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 라.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바. 예산지원 : 없음(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국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4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2014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14년 12월
- 위탁계약 체결 : 2014년 12월
- 위탁운영 : 2015년 1월 1일

다. 위탁운영 선정계획 : 따로 붙임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계획

□ 배 경

-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4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이행
- 2013년 11월 경남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미비사항 보완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 위탁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운영
 - 골프연습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거창스포츠파크 테니스장
 - 테니스장 운영
 - 테니스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위탁현황

○ 골프연습장

- 시설명: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번지 일원
-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3,917㎡	지상2층	258.0㎡	300.2㎡	철근콘크리트 구조	10타석	100m

○ 테니스장

- 시설명: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
- 시설규모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양투카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66.28㎡	12개	7,829㎡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5년 이내 (1회내 재계약가능)
- 위탁자 선정방침
 -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시 재공고

-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

-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14년 10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
 - 수탁자 모집공고 : 2014년 11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 2014년 11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4년 12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14년 12월
 - 협약서 공증절차이행 : 2014년 12월
 - 시설 인계·인수 및 운영 : 2015년 1월 1일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4.7.8.] [법률 제12201호, 2014.1.7.,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23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3.25>
-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